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
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·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. 다만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그리고 재무관·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매비를 지급결의하면서 부재중인 일상경비출납원 인감을 무단 사용

사례2> 재활용선별장 정수기 사용료를 사무관리비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분임재무관이 부재중임에도 직무대리 변경 없이 원인행위 결재

사례3> 재무관 휴가 시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을 동일하게 지정 후 지출결의서상 재무관과 지출원 동일인이 날인하여 예산 집행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지정 및 변경하여 회계 처리할 것